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0. 7. .

법제처 심사 전

법무부
기획조정실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검찰총장, 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 위임되어 있던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대한 승인사무를 법무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던 검찰청 소속 인력 26명(4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7명, 9급 12명)을 법무부로 이체하고, 법무행정 분야 국가 송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평가대상조직으로 법무실 송무심의관을 신설하며, 관련 소송사무에 필요한 인력 11명(고위공무원단 1명, 5급 10명)을 증원하는 한편,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평가대상조직으로 법무실 국제분쟁대응과를 설치하며,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중앙행정기관별 조직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인 직제로 규정하던 보좌기관에 관한 사항 중 실장·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소관 업무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5퍼센트에서 총정원의 7퍼센트로 상향하려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00. 00. 공포)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없음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6제1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획조정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③ 정책기획관은 직제 제5조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3호의3, 제14호 및 제15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직제 제5조제3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② 직제 제5조제1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정책기획관·비상안전기획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

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무실장 및 법무심의관”을 “법무실장”으로, “직위의 직무등급에 대하여 법무실장은 가등급으로, 법무심의관은 나등급으로 한다”를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법무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법무심의관·송무심의관으로 하며, 법무심의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송무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법무심의관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다만 직제 제9조제3항제2호 중 행정소송·국가배상 관계 법령의 해석은 제외한다.

④ 송무심의관은 직제 제9조제3항제2호(행정소송·국가배상 관계 법령의 해석에 한한다),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⑨ 국제분쟁대응과장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투자분쟁 대응에 관한 사항
2. 국제투자분쟁 예방에 관한 사항
3. 국제투자분쟁 관련 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의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제5항(중전의 제2항) 중 “법무과 · 국제법무과 · 국가송무과 · 통일법무과 · 상사법무”를 “법무과 · 국제법무과 · 국제분쟁대응과 · 국가소송과 · 행정소송과 · 통일법무과 · 상사법무”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3항) 중 “국제법무과장”을 “국제분쟁대응과장”으로, “국가송무과장 · 통일법무과장”을 “국제법무과장 · 국가소송과장 · 행정소송과장 · 통일법무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5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를 제8호로 한다.

제5조제10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송무과장”을 “국가소송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제4호 및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행위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업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4.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및 비송사건 수행업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6. 소송총괄관의 지휘·감독(국가소송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⑪ 행정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소송(특허소송을 포함한다)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법무부소관 행정심판의 처리
3. 소송총괄관의 지휘·감독(행정소송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4. 헌법재판의 수행
5. 행정 각 부처의 헌법재판사무에 관한 법률적 자문
6. 헌법재판과 관련한 헌법제도의 연구
7. 헌법재판과 관련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간행

제8조제1항 중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교정정책단장과 보안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을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정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교정정책단장·보안정책단장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교정정책단장은 직제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보안정책단장은 직제 제12조제3항제22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7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제9조제1항 중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출입국정책단장과 국적·통합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을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출입국정책단장과 국적·통합정책단장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출입국정책단장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직제 제13조제3항제16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제32조제1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7명”을 “8명”으로, “2명”을 “3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4명(4급)”을 “15명(4급 1명 4급)”으로, “1명,”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11명”을 “14명”으로, “3명”을 “6명”으로 한다.

제33조제8항 단서 중 “5퍼센트”를 “7퍼센트”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치료감호소장”을 “송무심의관, 치료감호소장”으로 한다.

별표 5 총계 “706”을 “74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75”를 “715”로 하며, 고위공무원단 “5”를 “6”으로 하고,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6”을 “8”로 하며,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14”를 “25”로 하고, 행정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11”을 “14”로 하며,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16”을 “23”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4”를 “10”으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22”를 “28”로 한다.

별표 5의3 및 별표 5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3 제1호에 3) 및 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무실 송무심의관	1명 (고위공무원 나급)	2023년 3월 31일까지
4) 법무실 국제분쟁대응과	3명 (3·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2023년 3월 31일까지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2항의 “송무심의관”,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4항, 제5항의 “국가소송과·행정소송과”, 제6항의 “국가소송과장, 행정소송과장”, 제10항 및 제11항, 제34조제1항의 “송무심의관”, 별표 13 제1호 조직 3)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행정소송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의 기능 이관에 따라 2020년 12월 28일부터 검찰청 소속 공무원 26명(4급 1명, 6급 3명, 7급 3명, 8급 7명, 9급 6명, 사무운영 9급 6명)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법무부로 이체한다.

제3조(정원에 관한 특례)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27일까지는 ‘4급 또는 5급 2명, 5급 1명, 7급 1명’으로 하고,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5, 별표 5의2에도 불구하고 2020년 12월 27일까지는 별표 5의3, 별표 5의4를 적용한다.

제4조(국가송무과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27일까지는 국가송무과가 존속하며, 제5조제10항, 같은 조 제1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송무과는 종전의 규칙 제5조제6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3]

총계	709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4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
비서(6급 상당)	1
비서(9급 상당)	1
일반직 계	678
고위공무원단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비상안전기획관)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검사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사	1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4
부이사관·검찰부이사관·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6
서기관	18
서기관 또는 검사	3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1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7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검사	1
서기관·총경 또는 검사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서기관 또는 교정관	3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	3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	5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2
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검사	2
서기관 · 행정사무관 · 보호사무관 또는 검사	3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8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또는 검사	25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또는 교정관	7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 사무관	1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검찰 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기술서기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2
교정관	20
보호사무관	11
검찰사무관	20
검찰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	2
출입국관리사무관	31
행정사무관	5
행정사무관 또는 교정관	3
행정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	3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15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또는 교정관	21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 교정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 사무관	1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교정관	1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교정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 또는 간호사무관	2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7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	1
전산사무관	7
교감	32
보호주사	11
검찰주사	34
검찰주사 또는 보호주사	2
출입국관리주사	38
행정주사	2
행정주사 또는 교감	2
행정주사 또는 보호주사	1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22
행정주사·검찰주사·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검찰주사 또는 교감	31
행정주사·검찰주사 또는 보호주사	1
행정주사·검찰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검찰주사 또는 전산주사	4
교감·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2
사서주사	1
공업주사	4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통신주사	1
식품위생주사	1
시설주사	7
전산주사	13
전산주사·검찰주사 또는 통계주사	1
운전주사	1

교위	19
보호주사보	12
검찰주사보	10
검찰주사보 또는 보호주사보	1
출입국관리주사보	25
행정주사보 또는 보호주사보	3
행정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11
행정주사보 · 검찰주사보 또는 교위	11
행정주사보 · 검찰주사보 또는 보호주사보	3
행정주사보 · 검찰주사보 또는 출입국관리주사보	1
행정주사보 · 검찰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교위 · 간호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1
전산주사보	12
전산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1
운전주사보	1
기록연구사	1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16
행정서기 또는 보호서기	5
행정서기 또는 교사	5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4
보호서기	1
운전서기	1
행정서기보	4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4
행정서기보 또는 보호서기보	1
행정서기보 또는 출입국관리서기보	1
운전서기보	10
방송통신서기보	1
통신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22

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양성평등정책 담당)	1
검사 계	25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8
검사(사법연수원 부원장 1명 포함)	17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의4]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709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4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
비서(6급 상당)	1
비서(9급 상당)	1
일반직 계	678
고위공무원단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비상안전기획관)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검사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4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검사	1
부이사관 · 검찰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4
부이사관 · 검찰부이사관 ·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6
서기관	19
서기관 또는 검사	3
서기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1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7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또는 검사	1

서기관 · 총경 또는 검사	1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서기관 또는 교정관	3
서기관 또는 보호사무관	3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찰사무관	5
서기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2
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검사	2
서기관 · 행정사무관 · 보호사무관 또는 검사	3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8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또는 검사	25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또는 교정관	7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 시설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기술서기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기술서기관 또는 전산사무관	2
교정관	20
보호사무관	12
검찰사무관	20
검찰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	2
출입국관리사무관	31
행정사무관	5
행정사무관 또는 교정관	3
행정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	3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15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또는 교정관	21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 교정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 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교정관	1
행정사무관 · 검찰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비서)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교정관 · 의무사무관 · 약무사무관 또는 간호사무관	2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7
공업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보호사무관	1
전산사무관	7
교감	32
보호주사	10
검찰주사	34
검찰주사 또는 보호주사	2
출입국관리주사	38
행정주사	2
행정주사 또는 교감	2
행정주사 또는 보호주사	1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22
행정주사 · 검찰주사 ·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 · 검찰주사 또는 교감	31
행정주사 · 검찰주사 또는 보호주사	1
행정주사 · 검찰주사 또는 시설주사	1
행정주사 · 검찰주사 또는 전산주사	4
교감 · 간호주사 또는 의료기술주사	2
사서주사	1
공업주사	4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

공업주사·시설주사 또는 통신주사	1
식품위생주사	1
시설주사	7
전산주사	13
전산주사·검찰주사 또는 통계주사	1
운전주사	1
교위	19
보호주사보	12
검찰주사보	10
검찰주사보 또는 보호주사보	1
출입국관리주사보	25
행정주사보 또는 보호주사보	3
행정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11
행정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교위	11
행정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보호주사보	3
행정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출입국관리주사보	1
행정주사보·검찰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2
교위·간호주사보 또는 의료기술주사보	1
전산주사보	12
전산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1
운전주사보	1
기록연구사	1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16
행정서기 또는 보호서기	5
행정서기 또는 교사	5
행정서기 또는 출입국관리서기	4
운전서기	1

행정서기보	4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4
행정서기보 또는 보호서기보	1
행정서기보 또는 출입국관리서기보	1
운전서기보	10
방송통신서기보	1
통신운영서기보	1
사무운영서기보	22
전문경력관 나군(사진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양성평등정책 담당)	1
검사 계	25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8
검사(사법연수원 부원장 1명 포함)	17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u><신 설></u>	제1조의6(기획조정실장) <u>① 기획 조정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 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u>
<u>② 기획조정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 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 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 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기획관은 고위공 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 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u>② 직제 제5조제1항에 따라 기 획조정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 은 정책기획관·비상안전기획 관으로 하며, 정책기획관은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 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며, 비상안전기획 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 기제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 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u>
<u><신 설></u>	<u>③ 정책기획관은 직제 제5조제3 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 의2, 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1 3호의2, 제13호의3, 제14호 및</u>

<신 설>

① (생 략)

③ ~ ⑨ (생 략)

제5조(법무실) ① 법무실장 및 법무
심의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에 대하여 법무실장은
가등급으로, 법무심의관은 나등급
으로 한다.

<신 설>

제15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
정실장을 보좌한다.

④ 비상안전기획관은 직제 제5
조제3항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의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
을 보좌한다.

⑤ (현행 제1항과 같음)

⑥ ~ ⑫ (현행 제3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

제5조(법무실) ① 법무실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
로 보하는 경우 그 직무등급은 가
등급으로 한다.

② 직제 제9조제1항에 따라 법무
실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법무심의관·송무심의관으로
하며, 법무심의관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
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
하는 경우 그 직무등급은 나등
급으로 하며, 송무심의관은 고

<신 설>

<신 설>

② 법무실에 법무과 · 국제법무과 · 국가송무과 · 통일법무과 · 상사법무과 및 법조인력과를 둔다.

③ 법무과장은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국제법무과장 및 상사법무과장은 부이사관 · 검찰부이사관 ·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로, 국가송무과장 · 통일법무과장 및 법조인력과장은 서기관 · 검찰수사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법무심의관은 직제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다만 직제 제9조제3항제2호 중 행정소송 · 국가배상 관계 법령의 해석은 제외한다.

④ 송무심의관은 직제 제9조제3항제2호(행정소송 · 국가배상 관계 법령의 해석에 한한다),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⑤ ----- 법무과 · 국제법무과 · 국제분쟁대응과 · 국가소송과 · 행정소송과 · 통일법무과 · 상사법무-----
-.

⑥ -----
----- 국제분쟁대응과장 -----

국제법무과장 · 국가소송과장 · 행정소송과장 · 통일법무과장 -

서기관 또는 검사로 보한다.

④ (생략)

⑤ 국제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국제투자분쟁 예방 및 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 9. (생략)

<신설>

⑥ 국가송무과장은 -----
-----.

1.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신설>

--.

⑦ (현행 제4항과 같음)

⑧ -----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4. ~ 8. (현행 제5호부터 제9호
까지와 같음)

⑨ 국제분쟁대응과장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투자분쟁 대응에 관한 사항

2. 국제투자분쟁 예방에 관한 사항

3. 국제투자분쟁 관련 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의 실무 운영에
관한 사항

⑩ 국가소송과장은 -----
-----.

1. (현행과 같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행위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u>지휘 · 감독</u>	3. ----- <u>수행업무의 지휘 · 감독에 관한 사항</u>
5.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 건 및 비송사건의 <u>지휘 · 감독</u>	4. ----- ----- <u>수행업무의 지 휘 · 감독에 관한 사항</u>
2의2. 국고손실 환수송무의 수행 및 <u>지휘 · 감독</u>	5. (현행 2의2호와 같음)
3. 행정소송의 수행 및 <u>지휘 · 감독</u>	<삭 제>
4. 소송총괄관의 <u>지휘 · 감독</u>	6. ----- <u>지휘·감독(국가소송 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u>
6. 법무부소관 행정심판의 처리	<삭 제>
7. ~ 8. (생략)	7. ~ 9. (현행 제7호부터 제9호까 지와 같음)
10. 헌법재판의 수행	<삭 제>
11. 행정 각 부처의 헌법재판사 무에 관한 법률적 자문	<삭 제>
12. 헌법재판과 관련한 헌법제 도의 연구	<삭 제>
13. 헌법재판과 관련한 자료의 조사 · 수집 및 간행	<삭 제>
14. 정부법무공단의 지도 · 감독 <신 설>	10. (현행 14호와 같음) ⑪ <u>행정소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1. <u>행정소송(특허소송을 포함한다)의 수행 및 지휘 · 감독에 관한</u>

⑦ ~ ⑨ (생략)

제8조(교정본부) ① 교정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
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
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
고, 교정정책단장과 보안정책단
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
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
다.

<신설>

사항

2. 법무부소관 행정심판의 처리

3. 소송총괄관의 지휘·감독(행정
소송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

4. 헌법재판의 수행

5. 행정 각 부처의 헌법재판사무에
관한 법률적 자문

6. 헌법재판과 관련한 헌법제도의
연구

7. 헌법재판과 관련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간행

⑫ ~ ⑭ (현행 제7항부터 제9
항까지와 같음)

제8조(교정본부) ① -----

----- 가등급으로 한
다.

② 직제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
정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신 설>

<신 설>

② ~ ⑩ (생략)

제9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출입국정책단장과 국적·통합정책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교정정책단장·보안정책단장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교정정책단장은 직제 제12조 제3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보안정책단장은 직제 제12조 제3항제22호부터 제25호까지 및 제27호부터 제3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⑤ ~ ⑬ (현행 제2항부터 제10항까지와 같음)

제9조(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① -----

----- 가등급으로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 ⑫ (생 략)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

②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출입국정책단장과 국적·통합정책단장으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출입국정책단장은 직제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24호부터 제2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④ 국적·통합정책단장은 직제 제13조제3항제16호부터 제23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본부장을 보좌한다.

⑤ ~ ⑮ (현행 제2항부터 제12항까지와 같음)

제32조(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

----- 7퍼센트 -----

의2와 같다.

② 법무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생략)

2. 국제투자분쟁 예방·대응, 국
제협약 관련 법률 자문 및 국
제사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7명(4급 또는 5급 5명, 5급 2명)

3. ~ 7. (생략)

8. 국가·행정소송 등 수행·지휘
및 감독, 송무행정 분야 법령
제정·개정 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4명(4급 또는 5급 2명, 5급
1명, 7급 1명)

9. ~ 15. (생략)

16. 그 밖의 정원 중 11명(3급
또는 4급 4명, 4급 3명, 5급 2명
및 6급 2명)

③ (생략)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⑦ (생략)

⑧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

-----.

② -----

-----.

1. (현행과 같음)

2. -----

8명----- 3명

3. ~ 7. (현행과 같음)

8. -----

-- 1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1명,-----

9. ~ 15. (현행과 같음)

16. ----- 14명-----
----- 6명-----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2와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 제2항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2에 따른 총정원의 <u>5퍼센트</u>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2의2와 같다. ⑨ (생략) 제3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5조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u>감찰관, 법무심의관, 치료감호소장 및 치료감호소 의료부장을 말한다.</u> ② (생략)	----- ----- ----- ----- ----- ----- ----- ----- <u>7퍼센트</u>----- ----- ----- ----- ⑨ (현행과 같음) 제3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 ----- ----- <u>감찰관, 법무심의관, 송무심의관,</u> -- ----- ----- ②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표

[별표 5]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706</u>	<u>746</u>	+40
·	·	·	
일반직 계	<u>675</u>	<u>715</u>	+40
고위공무원단	<u>5</u>	<u>6</u>	+1
·	·	·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u>6</u>	<u>8</u>	+2
·	·	·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u>14</u>	<u>25</u>	+11
·	·	·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u>21</u>	<u>25</u>	+4
·	·	·	
행정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u>11</u>	<u>14</u>	+3
·	·	·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u>16</u>	<u>23</u>	+7
·	·	·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u>4</u>	<u>10</u>	+6
·	·	·	
사무운영서기보	<u>22</u>	<u>28</u>	+6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5의2]

법무부 공무원 정원표(제32조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706</u>	<u>746</u>	+40
·	·	·	
일반직 계	<u>675</u>	<u>715</u>	+40
고위공무원단	<u>5</u>	<u>6</u>	+1
·	·	·	
서기관 ·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검사	<u>6</u>	<u>8</u>	+2
·	·	·	
행정사무관 또는 검찰사무관	<u>14</u>	<u>25</u>	+11
·	·	·	
행정주사 또는 검찰주사	<u>21</u>	<u>25</u>	+4
·	·	·	
행정주사보 또는 검찰주사보	<u>11</u>	<u>14</u>	+3
·	·	·	
행정서기 또는 검찰서기	<u>16</u>	<u>23</u>	+7
·	·	·	
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u>4</u>	<u>10</u>	+6
·	·	·	
사무운영서기보	<u>22</u>	<u>28</u>	+6
·	·	·	